

해외 대학 · 기관과의 학술교류협정 체결 절차 안내

<'23. 10. 20.(금), 국제협력실>

□ 관련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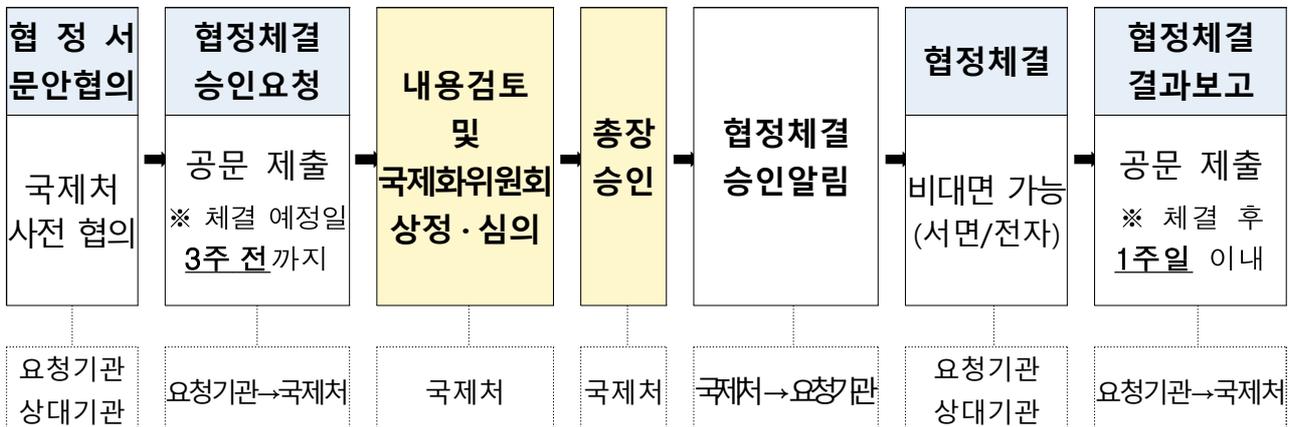
- 「부산대학교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에 관한 규정」 (규칙 제2817호, '22. 2. 24)

□ 세부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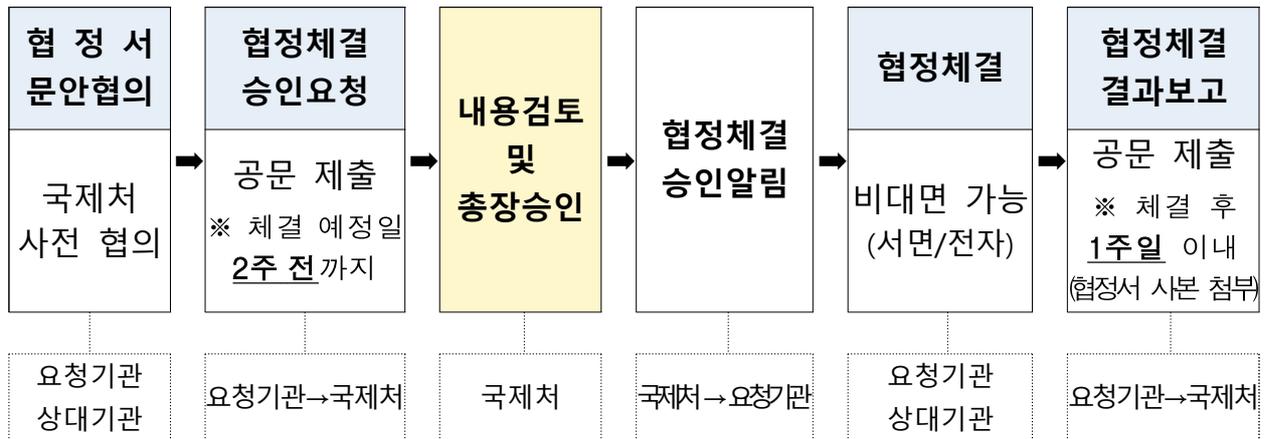
- 대상: 해외 대학·기관과 학술교류협정을 신규 또는 갱신 체결하고자 하는 기관*
 - * 「부산대학교 학칙」, 「부산대학교 행정조직·부속시설 등의 설치·운영과 사무분장규정」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에 한함
- 체결명의: 협정체결 대상, 목적에 따라 체결권자 구분
 - (총장) 대학교 수준의 일반적 협정 또는 둘 이상의 단위기관과 관련된 협정
 - ※ 협정체결 대상기관의 서명권자가 총장이나 기관장이 아닐 경우, 국제처장이 서명
 - (단위기관장) 단위기관*이 외국의 대학이나 기관과 체결하는 협정
 - * 단과대학, 전문대학원, 특수대학원, 지원·부속기관, 연구소 등
- 원칙 및 고려사항
 - 상호호혜와 지속적 교류의 원칙하에 공동 관심분야, 구체적 교류 형태, 예산확보 등 관련 내용을 고려하여 협정 타당성 검토
 - 협정 체결 명의에 따라 진행절차가 다르므로, 요청기관(단과대학, 대학원, 연구소, 학과 등)에서는 상대 기관과 협정서 명의에 대한 명확한 협의 필요

□ 관련 절차

- (총장 명의) 국제화위원회 및 총장 승인 대상



○ (단위기관장 명의) 총장 승인 대상



- (공통사항) 협정 승인요청 공문 제출 시 '협정체결추진계획서(별지 제1호 서식)' 첨부 및 공문 본문에 체결권자(서명권자) 반드시 명시
 - 대학차원의 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 국제화위원회 심의기간을 감안하여 **최소 3개월 전 국제협력실로 공문 요청 필요**

□ 행정 사항

- (협정서 원본) 체결권자에 따라 국제처(총장) 또는 단위기관(단위기관장) 보관
- (전산 관리) 체결권자에 관계없이 국제처에서 일괄 시스템* 등록·관리

- 붙임 1. 부산대학교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에 관한 규정 1부.
 2. 협정체결추진계획서 서식 1부.
 3. 협정체결 승인 요청 및 결과보고 공문 예시 각 1부. 끝.